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김형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2013년 6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개정이유

○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, 명칭의 정확화를 위하여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로 하며,

○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시하고 , 명칭의 정확화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명칭의 정확화 (안 제2조)

- 도지사 → 충청북도지사
- 충청북도 의회의원 → 충청북도의회

○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 신설(안 제3조 2항)

-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- 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- 도내 시·군 의회의원 및 시·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4. 검토의견

금번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“감사관실”을 “감사관”으로 변경하는 등 직제변경에 따른 명칭을 일치시키고,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대상을 명시하여 조례 내용의 명확성을 위해 개정을 하였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1.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. 끝.